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

2019. 12. 26.

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

제1장 총 칙

- 제1조(가이드라인의 목적) 이 가이드라인은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제공하여 인터넷망 이용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인터넷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도모 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다만,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「전기통신사업법」 및 기타 관련 법령상의 정의를 따른다.
 - 1. "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(ISP: Internet Service Provider)"란 콘텐츠 제공사업자 등이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에게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 등 전송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.
 - 2. "콘텐츠제공사업자(CP: Content Provider)"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.
 - 3. "콘텐츠전송네트워크사업자(CDN: Content Delivery Network)"란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디지털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의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콘텐츠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 이 가이드라인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와 콘텐츠제공 사업자 간,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와 콘텐츠전송네트워크사업자 간에 체결하는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적용된다.

제2장 이용계약을 위한 절차 및 조건

- 제4조(계약의 원칙)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, 콘텐츠제공사업자, 콘텐츠 전송네트워크 사업자(이하 "이용계약 당사자"라 한다)는 인터넷망 이용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.
 - 1. 이용계약 당사자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신의 성실의 정신에 입각하여 협상한다.
 - 2. 이용계약의 당사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 사업자의 거래상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다.
 - 3. 계약의 규모, 내용 등이 유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비차별적으로 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.
- 제5조(서면계약) 인터넷망 이용계약의 요청은 상호 신뢰를 도모하고 분쟁 발생 시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6조(계약서 작성 원칙) 인터넷망 이용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 해야 한다.
 - 1. 인터넷망 이용계약서는 계약 당사자 및 제3자가 쉽고,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.
 - 2. 인터넷망 이용계약서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,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포함한다.
 - 3. 인터넷망 이용계약서는 전송용량, 이용기간 등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.
- 제7조(정보의 제공) ① 이용계약 당사자 간에 인터넷망 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터넷망 이용대가의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그 사유를 함께 제시한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, 이용계약 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고, 요청받은 상대방은 이에 응한다.

제3장 불공정행위

- 제8조(불공정행위 유형) ① 이용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을 요구하지 않는다.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으로 볼 수 있다.
 - 1. 정당한 사유 없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계약내용 만을 수용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
 - 2. 상대방이 제시한 안에 대해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계약을 지연·거부 하는 경우
 - 3. 상대방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와의 인터넷망 이용계약을 체결 하거나 거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
 - 4. 이용계약 당사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경우
 - ② 이용계약 당사자는 본인이 체결한 다른 이용계약 조건과 비교하여 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인터넷망 이용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.
 - ③ 이용계약 당사자는 합의사항 일체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부하거나, 이면계약을 요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조건을 설정하지 않는다.
- 제9조(부당성 판단기준) 제8조에 따른 인터넷망 이용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.
 - 1. 인터넷망 구성 및 비용분담 구조
 - 2. 콘텐츠 경쟁력, 사업 전략 등 시장 상황
 - 3. 대량구매·장기구매 등에 의한 할인율
 - 4.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제3의 이용계약이 있는 경우 그 대가 산정에서 고려한 요소와 산정방식 등

제4장 이용자 보호

제10조(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의 의무) ①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 특별한

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서비스 이용자와 인터넷망 이용계약을 체결한 콘텐츠제공사업자, 콘텐츠전송네트워크사업자(이하 '콘텐츠제공사업자 등')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설비의 설치·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.

- ②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콘텐츠제공사업자 등 계약 상대방과 협의한다.
- ③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 인터넷망 이용계약의 변경 또는 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.
- 제11조(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의 의무) ①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은 자신의 책임 하에 있는 인터넷 트래픽의 경로 변경, 트래픽 급증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.
 - ②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은 인터넷망 이용계약의 변경 또는 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.

제5장 보 칙

- 제12조(관련 법령의 준수 등) ①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와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『전기통신사업법』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. ② 방송통신위원회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인터넷망 이용계약을 위한 협상,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 또는 이용자의 권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『전기통신사업법』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제13조(재검토 기한) 동 가이드라인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.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시행일) 이 가이드라인은 제정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